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자 : 이천시장

2. 제출일자 : 2001.12. 20

3. 주요관련규정

○ 수도법 제8조(수도사업의 경영원칙) 제 2.3항

4. 검토의견

공기업법 제14조 (독립채산)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수도법 제8조(수도사업의 경영원칙)제2항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규정, 동조 제3항 수도사업자는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수요자의 물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천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52.7%로 현저하게 낮아 단계적 차원에서 현실화하기 위하여 평균 30%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이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